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7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점차 늘어나는 화장수요 등을 고려하여 관외지역에서의 이용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을 줄이고자 관외주민의 화장시설 사용료를 타 지역 수준으로 인상하되 관내주민은 현 수준을 유지하며,
- 관내 주민의 범위에 외국인을 포함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는 관내 6개월 이상 거주 제한 규정없이 화장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을 주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사자에게 장사시설 사용료를 감면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관내주민의 범위를 출입국관리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시 관내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을 포함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는 관내 6개월 이상 거주 제한 규정없이 화장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을 줌(안 제6조)

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사자에게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안 제9조)

다. 관외주민의 화장시설 사용료를 인상함(별표 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8일까지(20일간)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참조:시의회문교사회전문위원실,전화032-440-6223,팩스 032-440-876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으로 한다)”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를 “시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관내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 사망한 자”를 “관내 주민(관내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 사망한 자와 출입국관리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시 관내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인천 가족공원의 단계별 묘지재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분묘이장이 공고된 유골”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 관내 거주자 및 관외 지역 거주자(외국인 포함)”을 “관내 주민(단 제9조에 의한 감면대상자는 주민등록일 기준으로 적용) 및 관외 주민”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사자”로 한다.

제13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21조 제목 중 “유골처리 등”을 “유골의 처리 등”으로 한다.

제21조의3제1항제1호 중 “회기”를 “회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중심으로부터”를 “중심으로”로 한다.

제23조 중 “장사시설을”을 “장사시설”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민간자본유치와”를 “민간자본 유치에”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띄어쓰기 표기 : 신·구조문 대비표 생략》

제4조 제목 중 “묘지등의수급계획”을 “묘지 등의 수급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중 “전문연구기관등”을 “전문연구기관 등”으로 하고, “수집·연구·분석등”을 “수집·연구·분석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묘지등”을 “묘지 등”으로 한다.

제9조 제목 중 “사용료등의 감면”을 “사용료 등의 감면”으로 한다.

제14조 중 “시설과기물등”을 “시설과 기물 등”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사용료등”을 “사용료 등”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장소등”을 “장소 등”으로 하며, “사항등”을 “사항 등”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30일전”을 “30일 전”으로 한다.

제28조 중 “다음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허가·신고 및 각종 처분이 나 기타의 행위 등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2]

장사시설 사용료와 관리료(제8조 관련)

1. 비조성묘지 사용료와 관리료

기준면적	기 본 금 액			4.95m ² 초과사용료	비 고
	계	사용료	관리료		
4.95m ²	21,400원	3,600원	17,800원	3.3m ² 1,200원	

2. 인천가족공원 조성묘지 관리료

구 분	기준면적	관리료	비 고
계단식 일반조성묘	4.95m ²	30,000원/1년	5년단위로 징수
가족봉안묘	8.26m ²	50,000원/1년	5년단위로 징수

3. 왕길조성묘지 사용료 및 관리료

기준면적	허가신청서 납부금액			사용자부담액			
	계	사용료	관리료	계	매장료	비석대	잔디료
4.95m ²	64,300원	15,400원	48,900원	※ 시행규칙에 의함			

※ 기준평수 초과 사용시 사용료는 초과면적 비율에 의한다.

4. 화장시설 및 봉안당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관내주민	관외주민	비 고
화 장 시 설	만15세 이상		1구당	60,000	1,000,000	
	만15세 미만		"	40,000	400,000	
	개장유골		"	50,000	400,000	
	사산아(4개월이상)		"	30,000	300,000	
봉 안 당	1인용	안치료	1기당	150,000	400,000	
		재사용료		100,000	400,000	
		연장기간		10년(최초) 5년 6회	10년(최초) 5년 6회	
	부부용	안치료	1기당	300,000	600,000	
		재사용료		200,000	600,000	
		연장기간		10년(최초) 5년 6회	10년(최초) 5년 6회	
자연장지	수목장립	안치료	1기당	150,000		
		재사용료		75,000		
		연장기간		15년(최초) 5년 5회		